
이용계약에 관한 사항



다솜요양복지센터

가. 계약목적

계약의 목적은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대상자(보호자)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에 있다.

나. 계약기간

원활한 서비스를 위하여 계약기간을 정한다.

- ① 센터와 대상자는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.
- ② 서비스 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으로 한다.

다. 계약방법

계약은 대상자와 직접 계약을 하고, 대상자의 의사 표현이 불가능할 때는 보호자를 포함한 법정 대리인과의 계약이 가능하다.

라. 이용자의 책임 이행

서비스 합의서에 다음 각 호에 내용을 기재하고, 대상자 또는 그 가족이 책임 이행에 동의하여야 한다.

- ① 센터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.
- ② 합의서에 기재된 사항을 변경할 시에는 반드시 센터에 통보한다.

마. 월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

이용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.

① 월 이용료

- 본 센터에서 서비스를 제공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의한다.
-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. 이때에도 자비로 하되 이용계약을 반드시 체결한다.
- 이용자가 별도로 병원을 이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병원비, 약제비 등의 비용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② 본인부담금

- ㉠일반 대상자: 15%
- ㉡의료 대상자: 6%
- ㉢경감 대상자: 6% 또는 9%
- ㉣기초생활수급자: 0%

③ 기타비용

-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% 금

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.

④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은 **[별지1]**와 같다.

(단,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개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다.)

바. 신원 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

① 신원인수인의 권리 : 대상자가 부당한 대우 등을 당할 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.

② 신원인수인의 의무 : 신원 인수인은 시설 및 그 비품에 대하여 대상자로 인하여 발생한 오손, 파손, 멸실했을 때는 본인 비용으로 센터에서 정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.

사. 계약의 해제

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 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.

① 대상자가 타 기관으로 이전 또는 사망하였을 때.

② 서비스이용자가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의 문제로 인해 요양보호사가 정상적인 급여제공을 할 수 없다고 판단 될 때.

③ 대상자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급여제공 중단을 요청할 때.

④ 고의적으로 센터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,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때.

아.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

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 센터는 이용자 또는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 변경을 특별한 절차 없이 방문 또는 통신망을 통하여 요구할 수 있다.

①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.

②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.

③ 수급자의 건강상태와 환경적 요인으로 변경 요구가 있을 경우.

④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.

전 각 항의 경우 대상자와 보호자의 요청이 있을 시 센터는 즉시 수렴하여 3일 이내에 대상자 및 보호자의 요구사항에 따라 급여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한다.